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친애하는 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께,

본 안내문은 뉴욕시에서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뉴욕시의 모든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지난 2017년 1월 30일자 안내문에 이은 후속조치를 안내해드리기 위해 발송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자녀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저희는 각 학교 교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민관세 수사청(ICE)에서는 법에 의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현행 연방 정책으로는 학교를 포함한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법 집행과 관련된 체포, 심문, 수색 및 감시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을 포함한 연방 수사관들은 전적인 필요에 의해 법으로 허가되었을 때만,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 전담 변호사들과 상의를 마친 후에만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ICE 수사관이 이민법 집행을 목적으로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될 경우, 해당 학교의 안전요원이 즉시 학교장에게 연락하고, 학교장은 안전요원 데스크에서 ICE 수사관을 맞이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수사관에게 학교 건물 밖에서 기다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육청 변호사들과 상의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 변호사들과 상의한 후에 해당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드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수사관들은 적법한 영장이 있을 경우에, 혹은 아주 드문 경우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에만 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은 전적으로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ICE 수사관을 포함하여 어떤 법집행관이라도 학생의 기록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해당 학교장은 일단 수사관이 제시한 문서를 받아서 이를 교육청 변호사에게 보내고 후속 지시를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 변호사들과 상의한 후에 해당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드릴 것입니다.

교육청 및 시장직속 이민자 지원실(MOIA)에서는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Know Your Rights(권리 찾기) 워크숍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Fordham Law Immigrant Preparedness Project, 가톨릭 자선단체들 및 기타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하여 뉴욕시 전역에서 100회에 걸친 Know Your Rights 워크숍을 학교 정규 수업시간 및 방과 후, 그리고 수업시작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100회의 포럼은 뉴욕시 전역의 커뮤니티 스쿨 및 인터내셔널 스쿨을 포함한 각종 학교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뉴요커들에게 주어진 이민법 관련 권리를 알고,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안전계획 및 사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ActionNYC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각 보로 별로 현장 지원 센터를 통해 학부모님들께 무료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무료 트레이닝을 확장해 나가고,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워크숍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추가의 커리큘럼 자료 및 사회-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수용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는 학생과 교직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를 실시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이 전달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보관 중인 기록을 갱신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지만,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체류신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정에서 학교 기록을 갱신해 주시어, 저희가 가장 최신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학생 1인당 학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최소 2명 이상의 비상연락처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나 보호자께서 학생을 학업하지 못하실 경우, 학교에서는 이 비상연락처를 이용하여 귀 자녀를 대신 학업할 밑을만한 사람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모든 뉴요커는 이민 신분 상태와 관계 없이 계속해서 뉴욕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311. 질문이 있으시면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supportingallstudents> 에서 교육청 이민관련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귀하와 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만한 추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FAQ 문서도 갱신하였습니다. 뉴욕시 시장 직속 이민자 지원실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정보는 전화 311 또는 웹사이트 nyc.gov/immigrants를 참고하십시오.

뉴욕시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이 담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뉴욕시는 이민자들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강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는 모든 뉴요커들과 함께 여러분 곁에 굳건히 서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armen Fariña
뉴욕시 교육청
교육감

—Nisha Agarwal
뉴욕시장 직속 이민자 지원실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커미셔너